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안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 펀드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 변경 사유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항목	정정전	정정후
협회펀드코드	(추가)	<u>종류 A : A5882.</u> <u>종류 I : A5881</u>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신설]	<u>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u>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제5호 신설]	<u>② 5. 종류형</u>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신설]	③(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I 수익증권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조좌로 한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설정할 수 있는 <u>수종의</u>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u>수종의</u>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호(신탁금의 납입)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u>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항목	정정전	정정후
	<p>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좌수에...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제9조(수익권의 분할)</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u>종류별로</u>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u>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u>종류A수익증권</u> 2. <u>종류I 수익증권</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제5항 신설]</p>	<p><u>⑤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제25조(판매가격)</p>	<p>[제1항 신설 및 제2항, 제3항 종류형으로 문구 보완]</p>	<p>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p> <p>1. <u>종류 A 수익증권</u>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u>종류 I 수익증권</u>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p> <p>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u>)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p>

항목	정정전	정정후
		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u> 으로 한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 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u>]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u>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u>]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u>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33조의 2(분배금)	2. 분배기준일: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한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2. 분배기준일: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u>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신규 발행일 익월 20일</u>),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한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제37조(수익자총회)	[제3항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항목	정정전	정정후
		를 개최할 수 있다.
제37조(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③~⑧	제37조(수익자총회) ④~⑨순연
제37조(수익자총회)	[제10항 신설]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9조 (보수)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u>종류 수익증권별로</u>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u>당해 종류 수익증권에</u>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u>(종류A)</u>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5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8% <u>(종류I)</u>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8%
제40조 (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부과한다.	①판매회사는 <u>종류 A 수익증권을</u>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u>당해 종류</u>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부과한다.
제41조 (환매수수료)제2항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u>종류 A 수익증권</u> :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2. <u>종류 I 수익증권</u>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제42조 (기타운용비용등)제1항 및 제3항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

항목	정정전	정정후
	<p>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하여지급한다. (단서 신설)</p> <p>(제3항 신설)</p>	<p>여지급한다. <u>다만, 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대하여만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게만비용을부담시켜야한다.</u></p> <p><u>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u></p> <p><u>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u></p>
부칙	(신설)	<p>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개정규정은 <u>2011년 8월 22일부터</u> 시행한다.</p> <p>제2조(기발행 수익증권의 종류) 이 신탁계약 변경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수익증권은 종류 A 수익증권으로 본다. 이에 종류 A 수익증권 신규 발행의 경우,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제30조 제2항 및 제33조의 2조 제2호 적용시 신규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보지 아니한다.</p>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종류형 추가	- 종류 A : A5882 - 종류 I : A588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특수형태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해당없음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종류형 추가	- 종류 A : A5882 - 종류 I : A588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자료 갱신		2010.10.9 최초 설정 2011.8.2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자료 갱신		운용현황 업데이트(다른 운용 자산규모)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	(추가) 종류형 ※당해 종류형 투자신탁의 구조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기준>	주석 일부 문구 보완		(주) 상기의 위험등급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의 자체 기준입니다. 동 위험등급 기준은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투자자는 투자 결정시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본인의 투자경험 및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u>집합투자업자의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 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u>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추가)	(3)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A : 가입제한 없음 - 종류 I :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매입 (3) 환매수수료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A-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I-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추가)	- <u>종류간기준가격이상이란 이유:종류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u>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u>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 I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및 자료갱신		-펀드 비용 관련 자료 갱신 및 종류형 전환에 따른 종류 I 관련 비용 추가 -종류 수익증권별 예시 업데이트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분배금 (1)분배금지급방법 2. 분배기준일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2.분배기준일: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 일로 하며 (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신규 발행일 익월 20 일), 그 이후에는 매월 20 일로 한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갱신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 자산 규모	자료 갱신		자료 갱신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u>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u>

변경 수리일: 2011년 8월 20일

기 타: 자세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